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2004.5.1. 제정]
[2017.1.1. 개정]
[2018.3.1. 개정]
[대학원교학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위덕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편 입 학

제2조(입학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 매학기 개학 전에 실시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특수사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제한한다.

1. 입학제한은 교육부의 고시나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 <개정 2009.9.10., 2014.10.23.>
2. 삭제 <2014.10.23.>
3.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현직교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4.10.23.>

제4조(지원전공 분야) 학위과정의 지원전공 분야는 학칙 제8조의 2에 의한다. <개정 2011.7.1, 2014.10.23.>

제5조(지원구비서류) 각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우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삭제>

마. <삭제>

바. 재직증명서, 교원자격증사본(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4.10.23.>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삭제>

라.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기타 필요한 서류

3. 특별강좌, 공개강좌

가. 입학원서(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1부

나. <삭제>

다. <삭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4.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1부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각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삭제>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연구계획서)

제6조(입학전형) ① 학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형

가. 석사학위과정 : 서류전형(학사성적), 면접고사(수학능력, 가치관, 경력사항 등 평가), 실기고사(예·체능계를 포함하여 실기고사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외국어 및 전공)을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박사학위과정 : 서류전형(학사 및 석사 성적), 면접고사(수학능력, 가치관, 경력사항 등 평가)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외국어 및 전공)을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2. 특별전형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동일하게 대학원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연구실적물심사 및 경력심사(연구소, 관공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특정지위,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로 자격심사 후 면접을 시행한다.

3. 편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한 시기에 하며, 서류전형, 면접고사로 전형한다.

② 별도의 시험을 시행할 경우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 TOEFL, TOEIC, TEPS의 성적우수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성적우수자의 판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전공시험은 지원학과(또는 전공)에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에 대하여 평가한다. 실기고사는 지원학과(또는 전공)에 대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④ 외국어 및 전공시험의 출제는 해당전공분야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⑤ 출제위원은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된다.

⑥ 면접위원은 해당학과(또는 전공)관련교수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입학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입학의 확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발표하며, 합격자는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편입학) ① 편입학 학생은 학칙 제19조 및 제22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일부를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편입학 한 학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우리 대학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④ 학점인정을 원하는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후 학기 초 3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입학한 학생은 소속 대학원별로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가. 2학기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3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3학기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 특수대학원

가. 2학기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3학기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3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록 및 학적

<개정 2014.10.23.>

제10조 <삭제>

제11조(정규등록) ① 삭제 <2009.9.10.>

② <삭제>

제12조(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 ① 학칙 제21조의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의 고시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4.10.23.>

②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 항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제12조의 2(휴학) ① 임신·출산·육아휴학시 전문의사가 발급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별도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0.23.>

제 4 장 교육과정, 수업

제13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학생의 요구, 학문적 동향,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 개정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학과(전공)단위로 전공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3.>

②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선수과목, 교직과목으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단, 기초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3.3.1.>

③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 교과목은 1학점으로 편성

한다. <개정 2009.9.10., 2012.6.25.>

④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2학점까지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학생이 중등특수교육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또는 중등특수교육전공 학생이 초등특수교육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시에는 30학점까지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 부전공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요하지 않는 자는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1., 2014.10.23.>

제13조의 2(학과 또는 전공설치) 학위과정별, 계열별, 학과 또는 학과별 전공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개설과목) ① 모든 과목은 단일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교과목개설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1.>

③ 학기당 개설교과목 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개설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4과목, 박사학위과정은 최대 4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2. 삭제 <2010.3.23.>
3. 불교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은 각각 최대 8과목, 사회복지대학원은 최대 12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2.1.27.>
4. 교육대학원은 기초과목 및 부전공 및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각 전공 당 최대 5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3.3.1., 2014.10.23.>
5. 교과목개설 시 각 학위과정에서 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중 유사과목은 공통수업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유사과목에 대하여 최소 1과목이상 통합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매 학기 종강 전까지 개설 교과목에 대한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6.11.15.>

제15조(선수과목) ① 학칙 제23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의 해당학부(과) 또는 관련학부(과)의 학사학위과정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반대학원 해당 석사학위과정 또는 특수대학원의 해당 석사학위과정에서 선수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선수과목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7.17.>

②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중 학사학위과정이나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해당학과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면제 또는 선수과목 학점인정신청에 의하여 미달되는 나머지 학점만 취득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과 과목선정은 해당학과(전공)에서 결정하며,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이수학점은 6학점이상 15학점 이내로 하며, 학생에 따라 과목지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대학원 성적평균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⑤ <삭제>

⑥ 선수과목 이수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과에서 지정받은 선수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이수계획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대학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삭제>

제16조(교과목담당교수) ①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교원
2. 전 호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타 대학의 교원
3. 박사학위과정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개정 2009.9.10., 2018.3.1.>
4.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박사학위수료 이상인 자. 단, 외국인 교수인 경우 석사학위이상 소지한 자 <개정 2009.9.10., 2018.3.1.>

② 교수 1인당 학기당 개설 교과목수는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시간강사 위촉) 시간강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해당학과(또는 전공)전공주임교수는 매 학기 교과목개설신청 시 시간강사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강사위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항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육 및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특수대학원의 경우 행정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

4. 교과목 특성상 해당교과목에 부합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5. 실기강사로서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제18조(교과목번호) 제반 학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에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0>

제19조(수강신청)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일반대학원은 9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논문 연구과목 이수시 1학점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선수과목, 부전공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3.3.1., 2014.10.23.>

③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폐강, 강의시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정정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구교과목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으로 학위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는 논문연구 교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9.10.>, <개정 2014.10.23., 2016.11.15.>

제20조(전과, 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은 동일 대학원내의 학과 및 전공에서 가능하며, 타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간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과는 전 학기까지의 이수한 과목의 평균평점이 B이상인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④ 전과 및 전공변경은 2학기부터 가능하며, 매 학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삭제 <2009.9.10.>

⑤ 전과(또는 전공변경)한 자는 전과한 학과(또는 전공)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

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은 이수학점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제21조(수강교과목의 포기) 수강중인 교과목을 수강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기 중 수업일 수 4분의 1이내에 수강교과목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제23조(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할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학과와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24조(재수강) ① 재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낙제한 교과목이 공통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은 첫 수강 시 학점이 말소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을 신청하는 필수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소속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 5 장 시험, 출석, 성적처리, 징계

제26조(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교과목성적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를 매 학기 종강 후 7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성적정정) 교과목담당교수는 착오에 따른 성적의 누락 및 실기가 있을 경우 매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에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9조(출석부 제출) 교과목담당교수는 수업 매 시간 출결상황에 대하여 확인 후 매학기 종강 후 7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①~⑤ 삭제<2016.11.15.> <개정 2016.11.15.> 학칙 제37조의 2에 의하여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 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각종 제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
4. 시험 부정행위자
5. 학우에게 절도, 폭행, 폭언, 성폭력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6. 학교의 허가없이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7.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학위논문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자
8. 인권침해 행위자
9.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31조(처벌의 감면) 대학원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통보 및 등재) 대학원장은 징계사실을 전공주임교수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 6 장 학위취득 자격시험

제33조(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① 학위취득자격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시험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학생의 전공에 필요한 외국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 종합시험, 졸업시험 :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

② 학위취득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1개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2. 종합시험 : 18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이상인 자
3. 전공 졸업시험 : 2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3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전공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매 학기 시행하며,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제36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의 각 학과(또는 전공)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전학과(또는 전공)의 공통 외국어부분은 교내의 관련학부 및 기관에 의

퇴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및 전공 졸업시험은 각 학과(또는 전공)별로 3인 이상의 대학원 담당교수를 출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별 3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과목은 해당 학과(또는 전공)가 결정한다.

③ 각 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출제범위) 삭제 <2009.9.10.>

제38조(배점,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전공 졸업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10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종합시험 및 전공졸업시험은 18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제39조(결과보고) 각 자격시험의 응시 및 시험결과를 보고서로 소속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적채점의 근거서류는 담당교수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겸임교원 및 강사의 담당 교과목일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제40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고 종합시험 및 전공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학기부터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제 7 장 학위논문

제41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이상 등록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해당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정한다. <개정 2011.7.1., 2016.11.15.>

②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신·구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공동지도의 경우 부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개정 2012.11.1.>

제41조의 2(연구보고서지도교수) 학칙 제27조 제3항, 제31조의 2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1조 제1항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1.>

제42조(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①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 매 학기차별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인원제한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논문계획서제출)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는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또는 전공)별로 심의를 필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27조 제3항 및 제31조의 2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와 실험, 실습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학과(또는 전공)의 학생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43조의 2(논문지도계획서제출) 삭제 <2009.9.10.>

제44조(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삭제 <2009.9.10.>

제45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하고, 외부인사의 위촉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권위자로 한다. <개정 2012.11.1.>

② 논문심사위원은 당해학기개시 후 30일 이내에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논문심사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이 되며, 학칙 제31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중 2인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9.9.10.>

⑥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교체가 부득이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45조의 2(논문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 심사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9.9.10.>

제46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신청)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10.31.>

제46조의 2(연구윤리 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9.21.>

제47조 (학위논문공개발표) 삭제 <2009.9.10.>

제48조 (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 2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2009.9.10.>

③ 삭제 <2009.9.10.>

④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논문심사포기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8.3.1.>

⑤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48조의 2(학위논문 심사판정)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각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10.>

1.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당해 학기 종강 7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의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1학기 이상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학위 최종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수여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1.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2. 제작물이용허락서

3. 완성논문 5부(각 심사위원이 날인한 인준논문 3부 포함)

4. 논문내용수록 CD <개정 2014.10.23.>

5.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신설 2016.11.15.>

제52조(학위논문 공포) 삭제 <2009.9.10.>

제53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제54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서식, 용지 및 제본

가.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쓰고 횡서로 한다.

나. 용지는 제본 후 19.5cm x 25.5cm 규격의 백색 타이프용지나 80모조지를 사용한다.

다. 용지의 상하좌우에 각각 2.0cm의 여백을 남긴다.

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글은 한줄 건너서 쓰고 용지 한 면에만 검정색으로 타자, 등사 또는 인쇄한다.

마. 제본할 때에는 표지를 검정색 형겅으로 씌워야 한다.

바. 겉표지는 3호 서식에 따르고 글자는 금박으로 찍는다. 필요시에는 논문제목 밑에 부제목을 붙여도 무방하다.

사. 겉표지 안쪽에는 백색 모조지를 붙이고 면지는 120모조지를 하며 그 다음에 속표지(4호 서식)를 넣는다.

2. 논문기재 순서 및 방법

가. 속표지 : 4호 양식에 따른다.

나. 논문인준서 : 5호 양식에 따른다.

다. 초록 : 논문 요지의 초록은 국문과 외국어로 된 2가지로 작성한다.

라. 항목을 나눌 때 I-A-(1)-(a) 또는 장-절-(1)-(가) 등으로 나눈다.

3. 편집순서

가. 제목 : 속표지1, 2

나. 인준서

다. 국문요약

라.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마. 본문(서론/ 본론/ 결론)

바. 참고문헌

사. 영문요약

아. 부록(질문지 등 부록으로 추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 8 장 연구보고서

제55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이외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7조 제3항, 제31조의 2에 의해 소속 대학원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② 졸업작품, 인턴십, 국내·외 학술지 발표 등의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9.10.>

제56조(연구보고서 지도교수의 자격) 시행세칙 제41조의 2에 의한다.

제57조(연구보고서작성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지도계획서) 삭제 <2009.9.10.>

제58조(연구보고서 심사 및 제출) ① 연구보고서의 심사는 연구보고서지도교수가 실시한다.

② 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수여일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완성된 연구보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제59조(연구보고서 합격판정) 연구보고서의 합격판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연구보고서심사 결과보고) 심사완료 후 당해 학기종강 7일전까지 연구보고서지도교수는 연구보고서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외국인 학생

제61조(입학전형) ① 외국인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에게는 전공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판단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의 2(자격시험) 외국인학생은 학위과정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은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영어로 할 수 있다.

제62조(입학지원서류) 외국인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지원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학위(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추천서 2부(지원학과 또는 전공의 전공주임교수 포함)
 5.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6. 신분증 사본
 7. 학비조달보증서
 8. 삭제 <2014.10.23.>
 9. 출입국사실증명서
 10.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액 증명원
 11.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 <개정 2014.10.23.>
 12. 대한민국의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제62조의 2(제적)** ①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의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다음사항에 해당할 시 제적할 수 있다.
1. 입학 후 30일 이상 장기 결석자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제 10 장 연구과정생

- 제63조(연구과정)** 학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64조(연구과정생)** 연구과정에 등록된 자를 “연구과정생” 이라 한다.
- 제65조(입학자격, 입학시기)**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다만, 대학원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6조(입학지원서류)** 연구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의 지원서류는 제5조에 준한다.
- 제67조(입학전형)** 연구과정생의 입학전형은 제6조의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68조(연구연한·수강 및 학점)**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과정생은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 ③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연구과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에 입학할 시에 해당과목의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연구과정생이 수업연한동안 지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구과정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⑥ 연구과정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 적증명서 【별지 2】를 발급할 수 있다.
- ⑦ 연구과정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69조(연구과정생의 등록)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0조(연구과정생의 제적) 연구과정생이 연구기간 중 그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학칙 제37조의 2를 준용한다.

제 11 장 특별강좌, 공개강좌

- 제71조(특별강좌·공개강좌)** ① 학칙 제33조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를 둔다.
- ②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의 입학자격은 관련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또한, 특별강좌는 별도의 수업연한의 제한없이, 강좌의 운영목표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 ④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는 개설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수업연한, 교과과정, 장학제도 등)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⑤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의 설치 후 세부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허가한다.
 - ⑥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각 강좌별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제 12 장 학사지도

제72조(전공주임교수의 자격 및 임명) ① 전공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1. 우리 대학교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개정 2012.11.1.>

2. 우리 대학교의 관련 학부에 소속된 전임교원 <개정 2012.11.1.>

② 기타 특별한 경우(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학과(전공) 등)에는 타 전공 전임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3조(전공주임교수의 임기 및 직무) ①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간표 작성 및 강사추천, 강의의 원활한 진행
2. 수강신청을 포함한 학사지도
3.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제청
4. 학과(전공)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5.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받은 시험의 관리
6. 기타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한 업무
7. 해당 학과(전공)의 홈페이지 관리 등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의 유고시에는 새로운 전공주임교수가 위촉될 때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대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전공주임교수회의의 소집)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주임교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4조의 2(학과 또는 전공교수회의) 전공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과(또는 전공)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다.

제 13 장 장 학 금

제7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각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1., 2014.10.23., 2015.9.21., 2016.11.15., 2018.3.1.>

제76조(장학생추천 및 선발)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과(또는 전공)소속 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1. 매 학기 과락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2. 등록회수가 대학원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를 선발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생의 경우 등록회수가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발함

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입생의 장학선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매 학기 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제77조(성적우수 장학생 동점자선발) 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 중 해당학기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장학생을 결정한다.

1. 다학점 취득자
2. 다과목 취득자
3. 높은 등급의 점수를 받은 과목수가 많은 자
4.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단, 1학기차인 경우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5. 연장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78조(장학금지급 및 확정)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단, 교내외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제출된 추천명부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중복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학종류별 특성에 따라 중복수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제79조(교체 및 승계) ①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교외장학생으로 추천 혹은 선발되었을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성적우수 장학 대상자가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때의 승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 성적 상위 50%까지 승계할 수 있다.(단, 성적 3.5이상인 자에 한 한다)
 2. 교외장학금은 제1호에 의한 원칙을 적용하나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0조(지급중지 및 이중수혜)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2. 제적되었을 경우
3.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 4. 시험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 5. 직전학기의 평점이 3.0이상이 아닌 자
- 6.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른 교내·외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장학금만 선택할 수 있다

제81조(수혜기간 및 유효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9.10.>

②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 한다.

제82조(실험조교장학금) 대학원 학과(전공)에 실험(연구)조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 실험(연구)조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임용기간동안 소속 대학원 해당 학기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입학금은 제외한다.

제83조(기타) 장학금관련사항 중 학칙 및 시행세칙이외의 것은 우리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장 학위수여

제84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9.9.10.>

① 학위논문 인준에 의한 석사

- 1. 25학점 이상(논문연구 1학점 포함) 취득한 자 <개정 2016.11.15.>
-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 5.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② 논문이외의 방법에 의한 석사

-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전공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 4.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 5. 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

③ 박사학위과정

1. 37학점 이상(논문연구 1학점 포함) 취득한 자 <개정 2016.11.15.>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5.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제85조(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로 하고 학위수여식은 동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여의결을 확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명예박사 학위수여 종별은 학칙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을 자의 공적의 성질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박사 학위는 우리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7호(준용) 이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4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5년 2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5년 6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6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교과과정) 제13조 제3항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7년 12월 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8월 1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0월 3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월 27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6월 25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7월 17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0월 30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4년 10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5년 9월 2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논문지도교수) 제1항, 제42조(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제43조(논문계획서 제출), 제7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별표 1】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별표1】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2006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대학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일반 대학원	성적장학금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90%
	특별장학금	본 종단(대한불교 진각종) 교직원 본 대학(원) 직원과 법인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타 종단 교직원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입학정원 외 모집학생(위탁 학생, 외국인)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7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면학격려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지급
	면학장학금	본 대학(원) 출신자 타 대학(원) 출신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입학학기 등록금의 30% 지급
불교 대학원	특별장학금	본 종단(대한불교 진각종) 교직원 본 대학 직원과 법인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타 종단 교직원 및 법사, 포교종사자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입학정원 외 모집학생(위탁 학생, 외국인) 종교 신행단체 간부,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7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면학격려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지급
	면학장학금	본 대학 출신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사회복지 대학원	특별장학금	본 종단(대한불교 진각종) 교직원 본 대학 직원과 법인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타 종단 교직원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에 한함) 종사자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입학정원 외 모집학생(위탁 학생, 외국인)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7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면학격려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지급
	면학장학금	본 대학 출신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경영 대학원	특별장학금	본 종단(대한불교 진각종) 교직원 본 대학 직원과 법인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타 종단 교직원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입학정원 외 모집학생(위탁 학생, 외국인)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7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면학격려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지급
	면학장학금	본 대학 출신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교육 대학원	특별장학금	본 종단(대한불교 진각종) 교직원 본 대학 직원과 법인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타 종단 교직원 교직원 및 공무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7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정규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면학격려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지급
	면학장학금	본 대학 출신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장학구분	대상	장학혜택	해당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2007학년도입학자부터	2007학년도입학자부터	
성적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90%	일반
위덕	본 대학출신자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본 대학원 출신자로서 박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종단스승	대한불교 진각종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밀교신문),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각 소속의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의 6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불교성직자	타 종단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불교포교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신교도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불교
	타 종단 포교종사자 및 포교(신행)단체 간부		
공무원 및 교직원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군공무원 (현역군인 및 군무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경영
지역사회교류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법인)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사회복지
교직원 및 가족	본 대학 및 법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실험(연구)조교	본 대학의 실험(연구) 조교 근무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면학격려	신·편입생은 입학전형점수가 석사과정 70/100이상 합격자, 박사과정은 140/200이상 합격자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특별	입학정원 외 입학자 (위탁, 외국인)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불교, 사회복지, 경영, 교육

※ 상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등록 2개월 전에 국민건강의료보험표 납부확인서(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선발하여 관리한다.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개정 2014.10.23., 2015.9.21.>

장학구분	대상	장학혜택	해당대학원
성적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위덕	본 대학출신자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특수
	본 대학(원) 출신자로서 박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종단스승	대한불교 진각종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특수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설립종단(대한불교 진각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밀교신문),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각 소속의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성직자	불교성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포교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신교도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불교
	타 종단 포교종사자 및 포교(신행)단체 간부		
공무원 및 교직원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5%	일반, 특수
	군공무원 (현역군인 및 군무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경영
지역사회교류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일반, 특수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법인)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사회복지
교직원 및 가족	본 대학 및 법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실험(연구)조교	본 대학의 실험(연구) 조교 근무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 특수
면학격려	신·편입생은 입학전형점수가 석사과정 70/100이상 합격자, 박사과정은 140/200이상 합격자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20%	일반, 특수
특별	입학정원 외 입학자 (위탁, 외국인)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일반, 특수
경제사정곤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매학기 일정금액	일반, 특수
지정장학금	지정자 또는 지정기관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급	일반, 특수

※ 삭제

(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개정 2016.11.15.>

장학구분	대상	장학혜택	해당대학원
성적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위덕	본 대학출신자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특수
	본 대학(원) 출신자로서 박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종단스승	대한불교 진각종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특수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설립종단(대한불교 진각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밀교신문),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각 소속의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성직자	불교성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포교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신교도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불교
	다 종단 포교종사자 및 포교(신행)단체 간부		
공무원 및 교직원	공무원 및 교직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5%	일반, 특수
	군공무원 (현역군인 및 군무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경영
지역사회교류	본 대학과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일반, 특수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법인)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사회복지
교직원 및 가족	본 대학 및 법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실험(연구)조교	본 대학의 실험(연구) 조교 근무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 특수
면학격려	신·편입생은 입학전형점수가 석사과정 70/100이상 합격자, 박사과정은 140/200이상 합격자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20%	일반, 특수
특별	입학정원 외 입학자 (위탁, 외국인)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일반, 특수
경제사정곤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매학기 일정금액	일반, 특수
지정장학금	지정자 또는 지정기관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급	일반, 특수

※ 삭제 <2017.1.1.>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장학구분	대상	장학혜택	해당대학원
성적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위덕	우리 대학교 출신자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우리 대학(원) 출신자로서 박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특수
종단스승	대한불교 진각종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특수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설립종단(대한불교 진각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일교신문),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각 소속의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성직자	불교성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포교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신교도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불교
	타 종단 포교종사자 및 포교(신행)단체 간부		
지역사회교류	우리 대학교와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일반, 특수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법인)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사회복지
교직원 및 가족	우리 대학교 및 법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실험(연구)조교	우리 대학교의 실험(연구) 조교 근무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 특수
면학격려	신·편입생은 입학전형점수가 석사과정 70/100이상 합격자, 박사과정은 140/200이상 합격자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20%	일반, 특수
특별	입학정원 외 입학자 (위탁, 외국인)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일반, 특수
경제사정곤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매학기 일정금액	일반, 특수
지정장학금	지정자 또는 지정기관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급	일반, 특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개정 2018.3.1.>

장학구분	대상	장학혜택	해당대학원
성적	학과별 성적우수자 학과별 추천자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위덕	우리 대학교 출신자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60%	일반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특수
	우리 대학(원) 출신자로서 박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종단스승	대한불교 진각종 스승(교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특수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설립종단(대한불교 진각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밀교신문),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각 소속의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성직자	불교성직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불교포교종사자	대한불교 진각종 신교도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일반, 특수
	타 종단 포교종사자 및 포교(신행)단체 간부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40%	불교
지역사회교류	우리 대학교와 협정체결기관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일반, 특수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법인) 종사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30%	사회복지
교직원 및 가족	우리 대학교 및 법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70%	일반, 특수
실험(연구)조교	우리 대학교의 실험(연구) 조교 근무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 특수
면학격려	신·편입생은 입학전형점수가 석사과정 70/100이상 합격자, 박사과정은 140/200이상 합격자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20%	일반, 특수
특별	입학정원 외 입학자 (위탁, 외국인)	정규학기 등록금액의 50%	일반, 특수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일반, 특수
경제사정곤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매학기 일정금액	일반, 특수
지정장학금	지정자 또는 지정기관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급	일반, 특수

【별지 1】 연구과정 수료증서 양식

연구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칙 제○○조에 의하여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 년 ○ 월 ○ 일

위덕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별지 2】 연구과정 연구실적증명서 양식

연구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분야에
대하여 ○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 년 ○○ 월 ○○ 일

위덕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